

보도 일시	2022. 12. 14.(수)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12. 14.(수)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장 권희수 (02-2110-1540)
	이용자보호과	담당자	주무관 김민지 (02-2110-1544)

## 스마트폰 필요없는 앱 삭제 쉬워진다!

- 방통위, 4개 앱에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토록 행정지도 -
-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방통위는 '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 제한 앱이 선택재되어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택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택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택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택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택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택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택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관련 창구를 개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선택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하였다.

- 붙임 1.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 주요내용  
2.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 끝.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

## 주요내용 알아보기



##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를 만든 이유는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앱 선택재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선택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 선택재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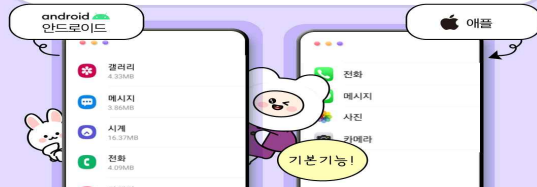
스마트폰을 한 번도 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앱을 실행 할 수 있는 기반환경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과 함께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앱입니다.



## 필수앱이란?

선택재앱 중 스마트폰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의 원활한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 입니다.

일반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일반 이용자의 인식,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신규 운영체제(OS)에 따른 최적화 필요성, 스마트폰 이용의 안정성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 필수 앱에 해당하는 경우는?

- ☑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경우 선택재앱제공자의 주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단말장치의 시스템 및 앱 구동이 저해되는 경우
- ☑ 높은 수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요구되어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 앱 마켓에서 재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재설치 시 시스템 연계 기능의 구동이 제한되는 경우



필수앱이어서 그래!

##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없는한 실행 또는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조치된 앱의 아이콘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것
- ☑ 조치된 앱에 대한 데이터가 램 (RAM, 휘발성 기억장치)에서 삭제될 것
- ☑ 이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것

## 사업자가 노력해야할 점은?

- ☑ 선택재앱의 기능, 종류 및 수량, 메모리의 크기 등 각종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스마트폰에 선택재앱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이용자가 선택재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할 때 불편하지 않게 편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삭제 제한 선택재 앱은 '온라인피해 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 (wiseuser.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기억해주세요!